

우리나라의 화재보험 요율제도해설(Ⅲ)



김 영 옥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화재특종 보험부장〉

1. 화재보험요율의 구성

화재보험료는 손해보상금의 총당에 지급되는 순보험료 부분과 경비와 이윤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순보험료율은 보험원가로서 나타낼 수 있는, 즉 영업보험요율중 일정한 위험집단에 대하여 일정기간중에 발생될 손해총액의 당해 위험집단의 총가액에 대한 비율로 볼 수 있으며 원수보험금(지급금-환입금), 직접손해사정비, 지급비금(적립금-환입금) 및 이에 대한 大 火 准 비금 혹은 안전할증등을 들 수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상 안전할증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가보험료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부가보험요율은 사업비율과 이윤율로 구성될 수 있는데 먼저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율산정에 필요한 통계에는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 대리점 수수

료, 社 費(일반관리비, 영업비, 간접손해사정경비, 투자경비)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보험 요율구성상으로 보면 주택물건과 일반물건의 경우엔 예정손해율 50%, 예정사업비율 45%, 예정이윤율 5%로, 공장물건과 창고물건의 경우에는 예정손해율 60%, 예정사업비율 35%, 예정이윤율 5%로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비 구분은 실무상 복잡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방법의 강구를 요망하는 의견이 많으나 어차피 이 통계처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단지 요율산정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경영분석에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 배분의 정확성이라는 견지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2. 화재보험요율 검증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미래의 일정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인 보험원가의 계산은 계약의 종료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상품판매시에는 비록 원가가 확정되기 이전이지만 보험요율의 결정은 불가피하고 이러한 보험요율은 과거의 정확한 위험집단별 평균원가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 추정하여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기간별로 보험요율에 대한 과거실적을 기준한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나아가서 현시점에서 장래의 적정요율수준을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업무를 손해보험요율수준의 검증이라고 한다. 또한 요율검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험요율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수정하는 것을 요율조정이라고 하며 이를 포괄하여 보험요율검증제도라고 한다.

보험요율의 예정률과 실적률간의 괴리현상을 방지하면 수치상등의 원칙이 깨어져 결국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어느 한편은 부당하게 손해를 입거나 또는 이익을 얻게되고 만일 이와같은 현상이 극심해지면 보험사업자가 파산하게 되어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보험산업은 순수한 요율경쟁을 통하여 적정한 요율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요율산정기구에 의한 보험요율의 검증과 요율수준의 탄력적인 조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또한 요율검증제도는 인가된 보험요율의 예정률에 대한 사전감독제도이므로 보험감독측면에서도 요율검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3. 화재보험 요율검증상의 실적손해율

요율검증의 첫단계는 과거의 실적손해율, 실적사업비율, 실적이윤율의 합계와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윤율과의 과부족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의 보험료에 대한 비율로서 보험요율산정상 중요한 요소이다. 손해율산출방법으로서 는 단순히 일정기간내에 수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계산하는 Written Basis, 일정기간내에 인수한 보험계약분에 대한 보험료와 그 계약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비율을 보는 Policy Year Basis, 기경과보험료분에 해당하는 손해발생률을 보는 Incurred to Earned Basis의 세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손해율이라고 하면

Written Basis에 의한 손해율을 가리키는 일이 있으나 요율산정에는 Written Basis에 의한 손해율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Policy Year Basis 또는 Incurred to Earned Basis에 의하는 것이 통상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단순히 손해율이라고 할 때에도 Incurred to Earned Basis에 의한 손해율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먼저 Written Basis계산방식이란 일정기간중에 인수한 수입보험료와 그 기간중에 지급한 보험금으로 손해율을 계산한다. 그 기간은 보통 사업연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명 Account Year Basis 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각 기간중의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사고발생에서 보험금지급까지의 기간분포가 일정하면 보험료와 보험금이 대응해서 실제손해율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요율수준을 판단하는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계산이 쉽고 이러한 사정을 이해한 후에는 나름대로의 이용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다.

Policy Year Basis방식이란 연도내에 인수한 계약분의 보험료와 그 계약에 대한 발생보험금의 비율로 계산한 것인데 일명 Underwriting Year Basis 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정확히 손해율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통계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이 지연되고 또한 통계작성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유지경비가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Incurred to Earned Basis방식이란 당해 책임기간중의 경과보험료와 그 기간중에 발생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경과보험료는 어느 특정기간 이전이나 또는 기간중에 작성된 증권기간동안 실제로 제공된 담보에 대한 보험료이며 발생보험금은 기발생손해로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동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적립금으로 준비해 둔 금액의 합계액이다. 기발생손해는 보험기간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부터 기인되어야 하지만 지급은 기간내 또는 기간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경과보험료산출방법에는 1/2법, 1/8법, 1/12법, 1/24법, 1/365법 등이 있다. <계속>